

고 시

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18-154호

주택재건축사업시행(변경)인가

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92길 53(대치동 977번지)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행(변경)인가 신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재건축사업 시행(변경)인가 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18. 10. 19.

강 남 구 청 장

1. 정비사업의 종류 : 주택재건축정비사업
2. 정비사업의 명칭 : 대치동 구마을 제2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
3. 정비구역의 위치 : 강남구 역삼로92길 53(대치동 977번지) 일대
4. 정비구역의 면적 : 14,594.2㎡
5. 사업시행자의 성명 : 대치동 구마을 제2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 조합장 이승호
6. 사업시행자의 주소 : 강남구 삼성로 72길 49
7.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: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48개월
8. 사업시행인가일 : 2018. 10. 16.
9. 사업개요
 - 가. 대지면적 : 12,456.3㎡ 나. 건 폐 율 : 33.54%
 - 다. 용 적 률 : 207.99% 라. 높 이 : 43.45m
 - 마. 용 도 : 공동주택 6개동(273세대) 및 부대복리시설
 - 바. 규 모 : 지하3층 ~ 지상15층, 연면적 46,659.9894㎡
10. 정비기반시설의 무상귀속(기부채납) 대상

종 류	규 모(㎡)	시 행 자	비 고
도 로	1,542.4	조 합	—
소 공 원	595.5	조 합	—
합 계	2,137.9		—

11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0조 규정에 의한 의제 사항

- 「주택법」 제15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
- 「건축법」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등

12. 기타 승인 조건 및 관계 도서는 강남구청 주택사업과(☎02-3423-6073)에 비치 보관